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3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이성권 · 이만희 · 이종욱  
조은희 · 박수영 · 이인선  
최보운 · 김재섭 · 정성국  
신성범 · 이현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허가 및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사용횟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부재하여 실습 과정에서 동일 동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이용되는 사례, 적절한 의료·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실습동물의 출처, 사용 이력,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가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고, 감독기관 역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이에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9조의2, 제97조제5항제1호, 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신설 등).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동물실습시설”이란 동물의 미용·훈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동물실습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는 실습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 동물의 특성,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하여 실습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것
2. 실습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실습 횟수·시간 및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3.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실습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실습시설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제10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 1. (생 략)
- 2. ~ 12. (생 략)
- ⑥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실습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실습시설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 2. ~ 12.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신 설>

- 1. (생 략)
- 2. ~ 18.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1. (생 략)
- 2. ~ 26. (생 략)
- ④ · ⑤ (생 략)

1.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 2. ~ 18.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

-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 2. ~ 26. (현행과 같음)
- ④ · ⑤ (현행과 같음)